

-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 받기 위하여 식자재 검수시 학교직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저가의 불량제품이나 무허가 원료의 반입을 차단해야 하나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식자재가 도착하여 검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식자재 검수 결과에 대한 학교측의 기록근거가 전혀 없으며, 업체소속 영양사는 본사에서 공급하는 식자재를 형식적으로 접수받아 조치하고 있음.
- 급식비 수납 등 회계관리 부적정
 - 급식비의 수납, 징수결의, 지출, 미납자관리 등 회계관리 업무를 학교에서 담당처리하여야 함에도 미납자관리 등 일부 업무는 업무과중을 핑계로 업체에서 관리하는 사례가 있음.
- 급식품 납품관리 미흡
 - 식품납품시 육안검수를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품목은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여 부정, 불량, 유해 및 무허가 식품이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육류납품시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를 철저히 징구하여 요구한 제품이 납품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
- 식품조리 부적정
 - 식품을 조리할 시 60cm 이상의 조리대에서 취급하여 바닥으로부터의 물 튀김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바닥에 식품을 방지해 놓고 조리하는 사례가 있었음.
- 급식에 대한 학생 기호도 조사 미이행
 - 급식 공급업자는 연2회 이상 급식에 대한 학생 기호도와 반응을 조사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을 작성하는 개선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음.
- 급식위생·안전점검 소홀
 - 안전한 급식운영과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담당직원은 매일 급식품의 검수, 안전점검, 영양관리,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에도 대부분 업무량 과다를 이유로 회피하고 있음.
- 3. 건의사항
 - 위탁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 방안 수립
 - 현행 위탁급식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 있는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급식의 내용과 질 향상을 도모 (검토사항)
 - 위탁급식업체의 시설투자 적정규모
 - 위탁급식업체 투자비용 대비 적정이윤 범위
 - 적정 식재료비 및 급식비 산정
 - 표준식단 작성
 - 위탁 운영과 직영의 장단점 분석
 - 기타사항
 - 위탁급식 표준계약서 작성
 - 각 학교마다 계약서 작성에 통일성을 기하고 필수 계약사항 누락으로 인한 분쟁 발생 요인 사전차단
 - 식자재 검수 및 조리과정에 학부모 참여방안 강구
 - 양질의 식자재 공급 투명성확보 및 안전한 급식운영
 - 영양사 학교소속 직원으로 전환배치 검토
 - 급식품 검수·조리 등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고 급식에 대한 책임성 증대
 - 위생·안전 점검 강화
 -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식품에 의한 질병 예방
 - 학교와 학부모의 급식기호도 조사 실시
 - 급식공급업자의 급식기호도 조사가 형식에 치우치거나 실제적으로 이행치 않고 있어, 학교와 학부모가 급식위탁업체와는 별도로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기호도, 선호도, 만족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단에 반영하여 균형적인 영양 식단 유지
 - 학교급식품 납품관리 철저
 - 급식품 검수강화, 관련서류 비치 및 확인을 통한 부정·불량 급식품 납품 근절
- IV. 결 론
- 본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하여 개선대책 마련과 급식업무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
-
- 서울특별시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p>의안 번호</p>	<p>903</p>	<p>2001년 6월 일 문화교육위원회</p>	
<p>1. 심사경과</p> <p>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p> <p>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5일 회부</p> <p>다. 상정일자 : 제20회 정례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2001.6.22 상정의결)</p>			<p>운영에 관한 법률 중 과외교습 금지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신고제도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개정하여 2001.4.7 공포하여 3개월 후인 2001.7.8부터 시행하게 되었으 며, -2000.9.15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제60차 규 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서울특 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외국어학원의 시설규모를 과도하게 정하 고 있다고 2000.9.21 이를 개선권고 하여 왔으며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조례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재분류되고 자 동차운전학원이 경찰청으로 이관되어 관 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p>
<p>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정책국장 윤용섭)</p> <p>가. 제안이유</p> <p>○ 국무조정실 제60차(2000.9.15) 규제개혁위 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시설기준) 제 1항 [별표1]중 외국어학원의 시설규모를 과도하게 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권고 (2000.9.21)해 음.</p> <p>○ 2000. 4. 27 헌법재판소에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중 「과외교습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을 신고제로 도입하여 「학원의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개정하 여 2001.4.7 공포됨.</p> <p>○ 건축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재분류됨.</p> <p>○ 도로교통법이 2001.1.26 개정되어 2001.6.30 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는 등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p> <p>나. 주요골자</p> <p>○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 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p> <p>○ 어학 교습과정의 시설규모를 330㎡ 이상에 서 150㎡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조례안 제3조제1항 별표1)</p> <p>○ 개인과외교습에 따른 교습증지명령 등을 신설(조례안 제10조의2)</p>			<p>○ 먼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외국어 학원의 설립기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61. 9. 33㎡ 이상 -1985. 8. 99㎡ 이상 -1988. 5. 198㎡ 이상 2,970㎡ 이하 -1991. 3. 330㎡ 이상 2,970㎡ 이하 -1995. 6. 3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시대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되어 현 제에 이르고 있음.</p> <p>○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배경을 보면, 정 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학원의 설립, 운영 에 관하여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는 측면에서, 현행 서울시의 외국어학원에 대한 규제가 보다 합리적인 외국어 강습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과도한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정비토록 개선·권고(2000.9.21) 한 데 따른 것임.</p> <p>○ 현행 시설 기준에 의하면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기본 시설을 330㎡(100평) 이상 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나 사무실 등 부대 시설까지 고려하면 최소 200평 이상의 면 적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소규모 학원의 신 규 진입을 막고 있어 자율과 규제 완화 라고 하는 시대 상황에 역행할 뿐만 아 니라 주로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는 개인과외 교습이 입법화되게 됨에 따라 설립기준의 과도한 제한은 명분을 잃게됨.</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윤병국)</p> <p>○ 동 개정조례안은, -2000. 4. 27 헌법재판소에서 학원의설립·</p>			

- 또한, 각 시·도별로 외국어 학원 시설기준을 보면, 최소 60㎡에서 최대 150㎡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유독 서울시만 과도한 시설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권고대로 현행 330㎡에서 150㎡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등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밖에 조례 제명의 개정이나 자동차운전 관련규정의 개정 등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1]의 “국제실무”의 “강의실·실습실·열람실”란 중 “100㎡ 이상”을 “150㎡ 이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안건별 심사결과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으로 한다.

제1조 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교습중지 명령 등)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중지 명령은 서면으로 한다.

【별표 1】 학원의 시설규모 중 국제실무분야, 외국어계열, 어학교습과정 「강의실·실습실·열람실」란의 “330㎡ 이상”을 “150㎡ 이상”으로 하고, 비교란 중 “생활편의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별표 2】 <2-1. 자동차 운전>의 “교습과정”란과 “시설·설비 및 교구”란의 내용을 삭제한다.

【별표 3】 <2-1. 자동차 운전>의 “교습과정”란과 “일시수용능력인원” 및 “비교”란의 내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의결(처리건수) : 8건(원안동의 8건)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정내역	심사결과
894	2001. 6. 9	2001. 6.11	제20회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6.26) 제12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9. 7)	보류 원안동의 (조건부)
895	2001. 6. 9	2001. 6.11	제20회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6.26) 제12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1. 9. 7)	보류 원안동의